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604 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 강득구·김준혁·김상욱

문정복 • 민병덕 • 복기왕

송재봉 • 이기헌 • 이상식

이학영 · 정준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「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 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.

한편,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신건강문제가 대두되는 등 청소년의 자 살률이 높아지고 있어,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·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,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17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,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은 개별 면담, 강의, 시청각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 이 경우 「초·중 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「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17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) ① 제17조(자살예방 상담・교육) ① ~ ④ (생 략)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 <신 설> 살예방 상담 • 교육은 개별 면 담, 강의, 시청각교육 및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 이 경우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 살예방 상담 • 교육을 「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 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 (6) ---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 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 •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· 보급하고, 자살예방 상담 •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· 단체 및 시설에 지 원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<u>제4항</u>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·교육, 방법 및 내용,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<u>제5</u>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⑦</u> <u>제5항</u>	
	<u>제6</u>
<u>항</u>	